

▶ 의료공제회 정관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공제회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의료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라 한다.

제2조 (소재지) 공제회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함)내에 둔다.

제3조 (목적) 공제회는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재학 중 학생의 의료를 보장하며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학생이라 함은 본교의 학부재학생, 일반대학원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을 말한다.

제5조 (사업) 공제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보험급여
 - 가. 요양급여
2. 기타 공제회의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

제 2 장 공 제 회 원

제6조 (회원) 1. 본교 학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제회비를 납부한자는 공제회원이 된다.

2. 공제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은 당해 학기 공제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며, 복학생은 가입을 원하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공제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자격상실 및 정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가. 사망한 때
- 나. 제적 등으로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때
- 다. 당해 학기의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라. 공제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또는 학생 신분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 마. 공제회가 해산된 때
- 바. 기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때

제 3 장 조 직

제8조 (운영위원회)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 이사장, 미래혁신원단장, 총무관리처장, 학생지원센터 직원 1인, 학부 학생대표 1인, 대학원 학생 대표 1인, 생협 팀장 중 1인 등의 당연직 위원과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장) 1. 생협 이사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2. 운영위원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3. 운영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당연직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1조 (간사) 간사는 생협 직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2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비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3. 공제회비 가입비에 관한 사항
4.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회의소집)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5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소집통보)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1. 운영위원회의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정관의 변경과 공제회의 해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사) 1. 공제회에 감사 1인을 둔다.

2. 감사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제회 재산 상황과 회계 감사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운영위원회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출석)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9조의 직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등의 실비보장)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한 공제회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직 원

제22조 (직원) 1. 공제회의 사업을 담당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공제회의 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3. 직원에 관한 사항은 생협 제 규정(인사/복무/보수 및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직원의 임무) 직원은 공제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명예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손해의 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공제회의 세입에서 지급하며 그 기준은 생협 직원 보수 규정을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공 제 급 여 및 절 차

제26조 (공제급여) 공제급여는 공제회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제27조 (공제급여의 종류 및 일부제한)

1.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및 기타 필요한 급여로 한다.
2. 공제급여의 종류일지라도 공제회의 재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8조 (공제급여 신청) 공제회원이 공제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 (급여 기준) 공제회 급여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공제의료기관) 1. 공제회 의료기관은 전국의 의원급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2. 공제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가입비, 공제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3조 (가입비, 공제회비) 1. 가입비, 공제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회비는 차이를 둘 수 있다.

제34조 (가입비, 공제회비의 불환급) 공제회원이 납입한 가입비, 공제회비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반환될 수 없다.

제35조 (회계년도) 공제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 및 결산) 1. 공제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공제회의 결산 및 사업보고는 회계년도 종료 후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37조 (해산) 공제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8조 (재산의 귀속) 공제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다만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 (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보칙) 이 정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25일 부터 시행한다